

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9. 15 구본춘의원외 4명

나. 회부일자 : 1994. 9. 15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'94. 9. 30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구본춘의원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'94. 3. 16) 및 동법 시행령 개정('94. 7. 6)에 따라 의회 행정사무의 감사, 조사에 있어 출석 및 증언진술을 거부하고 허위 증언을 할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대상 사무를 기관위임사무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감사기간을 종전 정기회기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(안 제2조)
- 감사 대상 사무를 종전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사무까지 구의회에서 확대실시(안 제6조)
- 종전에는 증인의 출석거부와 위증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증인에 대한 선서규정과 허위증언을 한자는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석 및 증언, 진술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(안 제9조)

다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 실시하고
- 감사대상사무를 종전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까지 확대 실시하며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증언, 진술 거부시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또한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, 증인의 선서 등 행정사무감사, 조사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